가 .

따라 징계해야 한함. 또한, 각 학교별 전문상담교사 배치 등과 관련해서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적용되며 그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 3-9.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학생의 징계

가

학생의 징계

- 학교장이 학생에 대해여 징계 가능
- ① 학교 내 봉사
- ② 사회봉사
- ③ 특별교육이수
- ④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 ⑤ 퇴학처분
 - 학교장은 징계 시 학생과 상담할 수 있음
 - 학교장은 경중에 따라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함
 - 학교장은 퇴학처분을 하기 전에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음
 - 학교장은 진로상담을 통해 다른 학교 훈련기관을 알선해야함
 - 학교장은 학칙에 의해 훈육해야하며 신체에 고통을 가하지 않아야함
- 퇴학은 의무교육과정이 아닌 학생에게 행하여야 함
 - ①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 ② 정당한 이유 없이 결석이 잦은 자
- ③ 기타학적에 위반한자
- 교육감은 징계를 받은 학생에게 교육할 때의 방법과 시설확보 등의 조치를 취해야함

(3) 소년법

학교폭력의 정도가 심하여 사법절차로 나아가는 경우 「소년법」의 적용을 받아 사건처리가 이루어지게 됨. 최근 학교폭력이 저연령화되면서 보호처분의 대상인 촉법소년의 범위를 현 10세 이상 14세 미만에서 10세 이상 12세 미만인 소년으로 개정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표 3-10. 「소년법」: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보호처분 및 조치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보호처분 및 조치

- 목적 :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과 조치를 통해 소년의 성장을 돕는 것임
- 소년의 정의 : 소년이란 19세 미만인자를 뜻하며 보호자는 법률상 '감호교육'을 할 의무가 있는 자
- 관할
- ① 소년 보호사건의 관할은 소년의 행위지, 거주지 또는 현재지로 함
- ② 소년 보호사건은 가정법원소년부 또는 지방법원소년부에 속함
- ③ 소년 보호사건의 심리(審理)와 처분 결정은 소년부 단독판사가 함
- 보호 대상과 송치 및 통고 : 다음에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의함
- ① 죄를 범한 소년
- ②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 ③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
- 이송
- ① 보호사건을 송치 받은 소년부는 보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결정(決定)으로 써 사건을 다른 관할 소년부에 이송할 수 있음
- ② 소년부는 사건이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그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이송 하여야 함
- 검찰 송치
- ① 소년부는 금고 이상의 범죄 사실이 발견된 경우 그 동기와 죄질이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